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「대한민국 우표 규정」(훈령) 개정·시행

1. 관 련

- 가. 「우편법」 제21조(우표의 발행권)
- 나. 「우편법 시행령」 제13조(우표류의 발행)
- 다. 「대한민국 우표 규정」(우본 훈령 제 669호)
- 라. 우편사업과-1632(2019. 6. 17., 「대한민국 우표 규정」 개정(안) 사전심의 요청)
- 마. 준법감시담당관-1757(2019. 7. 5., 「대한민국 우표 규정」 개정(안) 사전심의 회신)

2. 우표발행 행정의 객관성·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「대한민국 우표 규정」을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
가. 개정이유

- 1) 그간, 우표 소재의 객관성, 정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근거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
- 2) 사전심의 생략 가능 규정을 서면심의를 통하여 발행 결정을 받도록 개정하여 투명성 확보 및 우표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

나. 주요내용

- 1) 우표디자인 관련기관과 협의 명문화(안 제5조)
- 2) 심의 생략가능 규정을 삭제하고 사전 서면심의 대체로 개정(안 제10조 2항)
- 3) 기타 강행규정 조문 현실화, 모호한 조문 구체화 등 개선·보완
- 4) 우표 디자인 소재 및 디자인 내용 전문가 자문 강행규정(안 제5조 제1항) 및 발행일 협의 강행규정(안 제6조 제2항) 개선 등
- 5) 일반, 기념우표 발행대상 조문 명확화(안 제4조) 및 기념도장 사용기간을 영업일 기준 10일로 구체화(안 제33조 제1항) 등

다. 향후계획

- 1) 개정(안) 사전 행정예고('19. 8. 12. ~9. 1., 20일간)
- 2) 개정(안) 시행 : '19. 10. 1.(화)

- 붙임 1. 「대한민국 우표 규정」 개정(안) 주요내용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3. 「대한민국 우표 규정」 개정(안) 전문 1부. 끝.

주무관 **황의성** 전문경력관 가군 **신재용** 우편사업과장 **김성택** 우편사업단장 **송정수**
본부장 07/30
 代정진용
협조자

시행 우편사업과-2078 (2019.07.30.) 접수 ()

☎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(어진동) / <http://www.koreapost.go.kr>
전화 [044-200-8229](tel:044-200-8229) /전송 0505-005-1007 / tw20928@korea.kr / 비공개(7)